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61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남희 · 홍기원 · 주철현
김동아 · 임미애 · 김준혁
김기표 · 정진욱 · 서미화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
(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긴급사 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

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 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
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하 “공소청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檢事에 對한 送達)”을 “(검사에 대한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를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청등에 송부하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延長)”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등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 및 중요”를 “중요”로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확인 및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중요·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의 경우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

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7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は 適法한 節次에”를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로, “逮捕”를 각각 “체포”로, “拘束된”을 “구속된”으로, “疑心할”을 “의심할”로, “相當한 理由가”를 “상당한 이유가”로, “境遇에는”을 “경우에는”으로, “拘束된 者を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를 “구속된 자를 석방하도록 요구하여야”로 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4조의2제13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

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에”를 “공소청등에”로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로 한다.

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를 “변사자”로,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

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 제목 “(參考人과의 對質)”을 “(참고인과의 대질)”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로,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를 “피의자”로, “者와 對質하게”를 “자와 대질하게”로 한다.

제245조의3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광역공소청장에게”로 한다.

제2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의 제목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를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을 “고소인”으로,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제258조제2항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부터 제245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7조를 삭제한다.

제25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을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57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을 “광역공소청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의 제목 “(同前)”을 “(동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

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

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공소청등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 하고, 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を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를 “제467조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공소청등의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로 한다.

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등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471조의 제목 “(同前)”을 “(동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が 前項의 指

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등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지방공소청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를 “제197조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 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 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등사) ① ----- ----- ----- ----- <u>공소청</u> , <u>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하 “공</u> <u>소청등”이라 한다)</u>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 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u> <u>청</u> 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 ----- ----- ----- <u>공소</u> <u>청등에</u>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u>檢事에 對한 送達</u>) <u>檢事에</u> <u>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u> <u>廳에 送付하여야 한다.</u>	제62조(<u>검사에 대한 송달</u>) <u>검사에</u> <u>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공소</u> <u>청등에 송부하여</u> -----.
第67條(<u>法定期間의 연장</u>) <u>法定期</u>	제67조(<u>법정기간의 연장</u>) <u>법정기</u>

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
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
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
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
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
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
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

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등 소재지와의 거
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

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엄려가 있는 때

② -----

-----중요-----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
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
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
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신 설>

그 소재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95조의2(중요·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②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의 경우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행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

<신 설>

<신 설>

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충실히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
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
게 그 요지를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
여 검사에게 지연 등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
은 제5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
구하고 제1항의 요구가 이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직무배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
무배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2.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 요
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신설>

내에 징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요구자에게 통보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⑦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

⑧ 제7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第210條(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 外의 搜查)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查하거나 管轄區域 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 받아 搜查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 ⑫ (생략)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

-----공
소청등에-----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공소청등에-----

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생략)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

⑭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
소청등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에-----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が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

② -----

-----광역공소청에-----

-----.

③ -----

-----광

역공소청장이-----.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변사의 의심있는 사체
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검사가 검
시하여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
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
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u>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u>사법경찰관이</u> -----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u>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 ----- ----- ----- <u>사법경찰관의</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u>사법경찰관은</u> ----- ----- -----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
 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

1. · 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피의자-----자와 대질하게-----.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광역공소청장에게-----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치 등)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권) ① 고소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② 검사가 제258조제2항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は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

<삭 제>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계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が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

② 제1항의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

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공소청

② 「공소청법」 제57조에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소청장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
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
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다.

1.·2. (생 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 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
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

-----.

-----.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장-----

-----광역공소
청을-----
-----.

-----지방공소
청장-----
-----.

1.·2. (현행과 같음)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소

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第337條(刑의 消滅의 裁判) ① 「형법」 第81條 또는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생략)

③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

청장-----
-----.

-----지방
공소청장-----
-----.

⑥ -----

지방공소청장-----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소청등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 하여야 한다.

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關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は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 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공소청등에 대응한 법원에-----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등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取下로 인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を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취하로 인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집행할 경우에는 上訴法院에 대응한 公소청등 檢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公소청등에 있는 때에는 그 公소청등 檢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4급 이상의 公소청등 직원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7조제1항에 따라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公소청등의 직원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公소청등 檢사 또는 형의 선고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 · 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檢事が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高等檢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公소청등 檢사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公소청등 檢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公소청등 檢사의 指揮에 依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指揮를 할 때에는 소속 광역公소청장 또는 지방公소청장의 허가를-----.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

-----지
방公소청에-----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u>지방검찰청 검사장이</u>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② ----- ----- ----- ----- ----- -----<u>지방공소청장이</u>----- -----. ③ (현행과 같음)
--	--